

마라케시 조약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과제

The Marrakesh Treaty and the Tasks of Library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윤 희 윤 (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전략적 과제 |
| 2. 장애인의 도서 기근과 마라케시 조약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책은 만인에게 시공간적 장벽을 허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는 여권이다. 그러나 독서장애인에겐 책이 통로도 여권도 아니다. 그들은 접근 가능한 포맷의 대체자료 비율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접근격차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WBU와 WIPO가 추진한 국제협약이 마라케시 조약이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글로벌 도서 기근과 마라케시 조약을 집중 분석·연계하여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도서관은 출판계의 인식개선 및 표준화 유도,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보완 요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디지털파일 수집 및 서비스 강화, 마라케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서관지침의 개발·적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음식이 장애인의 육신을 지탱한다면 독서는 그들의 정신을 배양하기 때문이다. 독서장애인의 도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카르텔, 저작권자의 바리케이드, 도서관계의 취약한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저작권자, 출판계, 도서관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접근격차 95% 갭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도서 기근에 대한 진언이다.

ABSTRACT

For everyone, books are not only a passage to break down temporal and spatial barriers, but also a passport to the world. However, books are neither a passage nor a passport for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They are suffering from a severe book famine, with only 1-7% of alternative materials in accessible formats. The Marrakesh Treaty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promoted by the WBU and WIPO to reduce such access gaps and inequa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sively analyzed and linked the global book famine and the Marrakesh Treaty for the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including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and suggested strategic tasks and implementation plans to strengthen the services of the disabled in domestic libraries. The government and libraries should concentrate all their competencies on improving awareness, inducing standardiza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in the publishing industry,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copyright act and related laws, strengthening the digital file collection and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and developing and applying library guidelines to implement the Marrakesh Treaty. This is because if food supports the body of the disabled, reading fosters their spirit. In order to solve the global book famine for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blishing industry's cartels, copyright holders' barricades, and the weak platform of the library industry. All copyright holders, publishers, and libraries should participate in reducing the 95% gap in access between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That is the mantra of the book famine.

키워드: 마라케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시각장애인, 독서장애인, 도서 기근, 저작권법, 도서관서비스
Marrakech Treaty,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lind and Visually Impaired Persons, People with Print Disabilities, Book Famine, Copyright Law, Library Services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논문접수일자: 2022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8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73-91,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073>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고대부터 인생과 책의 불가분성을 역설한 지식인은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 공화정 말기의 라틴어 작가, 사상가, 웅변가, 변호사로 활약하였고 최고 정치 지도자인 집정관(Console)을 역임한 키케로(Cicero, BC 106-43년)다. 그는 절친 『아티쿠스에 보내는 편지』(Ad Atticum 4.8)에서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다’고 피력하였다(Lubbock, 1886, 241). 삶에서 책의 중요성과 존재적 가치에 대한 오마주다.

그럼에도 지구촌 취약계층 중 시각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책이 부족하여 소외되거나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2018, 5)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2억 5,300만 명(전맹 3,600만 명, 중증 2억 1,700만 명)에 달하고, 그들의 81%는 50세 이상이다. 시각장애인에 신체·인지·발달·학습 등으로 인한 장애인을 추가한 독서장애인은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 그럼에도 접근 가능한 포맷의 대체자료는 표준 인쇄물의 5%에 불과하다(Calvo, 2009, 5).

소위 도서 기근(book famine)은 독서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을 배제 또는 봉쇄함으로써 독립적 삶, 취업기회, 교육적 성취, 지식문화 향유, 사회적 활동 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도서 기근으로 인한 구조적 접근격차는 독서장애인의 정보해득력 약화에 머물지 않고 교육적·경제적·문화적 격차로 전이되고 확대되어 삶 자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주도한 국제협약이 2013년 채택되고 2016년 발효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다. 그럼에도 도서 기근과 조약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연계·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기근의 역사와 현주소, 마라케시 조약의 전모와 특징을 분석한 후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약이 도서 기근의 법적 주범을 저작권법으로, 독서장애인의 접근 불평등 및 격차를 해소해야 할 사회적 장치를 도서관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체자료에 대한 시장적 제약, 정부 정책적 실패, 도서관서비스 부실을 방치하는 한 그들의 접근격차 및 불평등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첫째, 도서 기근의 역사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독서장애인의 글로벌 도서 기근과 그것의 부정적 악순환 고리를 제시한다.

둘째, WIPO가 시각장애인 등의 표준 인쇄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채택된 조약의 배경과 경위, 전모와 골자, 적용성과 후속조치, 기대효과와 한계를 집중 분석한다. 그리고 조

약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개관한다.

셋째, 조약의 주요 골자와 연계하여 국내 독서장애인의 도서 해결과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출판계의 인식제고 및 출판 표준화, 「저작권법」 등 법령의 개정·보완, 국립도서관 디지털파일 수집력 강화, 조약 이행을 위한 ‘도서관·사서 지침’의 개발·적용 등 전략적 방안을 제시한다.

2. 장애인의 도서 기근과 마라케시 조약

2.1 장애인 도서 기근의 역사와 현주소

기근(famine)은 굶주림을 총칭한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 농작물 수확 급감, 인구 과잉과 불균형, 전쟁, 경제적 제약, 정책 실패 등에서 기인한다. 협의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극단적 식량부족 사태를 지칭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9.9%(8억 1,100만 명)가 기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FAO, 2020, 19).

이러한 식량 기근은 19세기부터 책 부족에도 차용되었다. 예컨대 1871년 11월 11일자 『New-York Tribune』 기사에서는 도서관 화재로 인한 책의 부족을 호소하였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1883년 4월 27일자 『Christian Colonist』 기사에는 침례교 설교자 스펀전(Spurgeon) 부인의 독서 부족에 대한 불만이 게재되었다. 1945년 창설된 유네스코는 1972년 발간한 『Books for All』에서 1950-1970년에 책의 종수는 2배,

부수는 3배 증가한 풍요 속에도 개발도상국(아프리카, 대다수 아시아 국가, 남미와 아랍 등)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도서 기근의 장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NESCO, 1972, 5-6; Roux, 2021, 261-262). 이어 1973년 『The Book Hunger』에서는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책 부족을 언급하면서 ‘적은 생산량, 부적절한 유통경로, 책 수입에 따른 고비용’을 이유로 제시하였다(Barker & Escarpit, 1973, i).

그 연장선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은 2013년 시각장애인의 도서 기근 또는 책의 기아를 공론화하였다. WBU에 따르면 세계 출판도서 중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의 대체자료 비율은 7-10%에 불과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1%에 미달한다(WIPO, 2016, 1). 환언하면 지구촌에서 연간 출판되는 220만 종 가운데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7-20%로 추정됨에 따라 3억 1,400만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이 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Ramírez-Montes, 2016, 9). 주요 단체 및 국가에서 출판종수 대비 대체자료 종수의 비율 추계한 <표 1>이 방증한다.

이러한 글로벌 도서 기근은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 정보접근 격차와 위기, 불평등을 대변하는 메타포다. 도서 기근은 접근기회의 제약에 머물지 않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를 배제한 채 주장하는 장애인 문화정책,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정보격차 해소, 도서관 핵심역량 강화와 장애인서비스 확대 등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책의 가뭄 및 해결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정책과 전략은 변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1〉 출판종수 대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 종수의 비율(%)

구분	대체자료 제작종수 비율	비고
WBU	10% 이하(개도국 1% 이하)	
IFLA	3-5%	
미국	10% 이하	
캐나다	5-7%	
스웨덴	20%	
영국	5% 이하	
프랑스	8% 이하	
네덜란드	5%	
남아공	5% 이하	
일본	10%	
한국	5% 이하(전자책 1% 이하)	

2.2 마라케시 조약의 전모와 특징

2.2.1 조약의 배경과 경위

조약은 복수 국가 또는 실체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법상 약속이다. 동일한 합의의 마라케시 조약이 등장한 배경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도서가 출시되지 않고, 다른 하나는 출판사가 저수익 대체자료 제작에 미온적이며, 마지막으로 국제적 교환과 공유를 위한 표준이나 규정이 없다.

이에 주목한 WIPO는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복제본 서비스를 확대할 의도로 마라케시 조약을 성사시켰다. 그 단초는 2003년 11월 WBU가 주관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가 제공하였다. 이어 2009년 5월 25일-29일 WIPO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상설위원회’ 제18차 세션에서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개선 조약안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2013년 6월 28일 모로코 마라케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데 이어 6월 30일 적격 조건

인 20개국(인도, 엘살바도르, 아랍에미리트, 말리, 우루과이, 파라과이,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몽골, 한국, 호주, 브라질, 페루, 북한, 이스라엘,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캐나다)이 서명하여 2016년 9월 30일 발효되었다(WIPO, 2016, 6). 그 후 가입국이 급증하여 2022년 현재 유럽연합(28개국)을 포함하면 113개국에 달한다. 조약이 성공한 동인은 표적집단(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의 명확성, 명분(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의 정당성, WBU 등 강력한 이해집단의 영향력이다.

그럼에도 조약이 목표로 설정한 글로벌 도서기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 후속조치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WIPO는 2014년 6월 WBU, 시각장애인 도서관, 데이지 컨소시엄, 표준기구, 저자·출판사 대표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인 ‘접근 가능한 도서 컨소시엄’(Accessible Books Consortium)을 출범시켰다. ABC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포맷의 책을 늘리고 전맹인·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화하면 다음 3가지로 집

약할 수 있다.

- 접근 가능한 포맷의 도서를 제작·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포괄적인 출판표준(접근 가능한 디지털 도서 생산의 골드 표준인 EPUB3)의 지지 및 장려
- 독서장애인의 국제 도서교환서비스 인증 기관(도서관 등)을 위한 온라인 DB인 글로벌 도서서비스(Global Book Service, TIGAR Service의 후신)

2017년을 기준으로 ABC GBS의 연간 국제교환서비스는 2만종을 상회하였고, 도서관 등 인증 기관이 다운로드한 파일은 8,300건 이상이었으며, 비용절감 효과도 약 1,660만 달러에 달하였다(McGrory, 2017). 2022년 현재 ABC GBS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총 7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포맷의 도서는 80개 언어로 된 73만종 이상, 점자 악보는 8천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2.2.2 조약의 전모와 골자

WBU는 각국 저작권법의 저작권자 권리제한 및 예외규정을 확대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도서를 제작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도록 WIPO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채택된 마라케시 조약은 3부분(전문, 조문, 합의된 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전문은 총 12개 문단이다. 조약의 실질적 목적은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게 존재하는 정보접근 장

벽 및 해소의 필요성이다. 그 외 문단에서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비차별·기회 균등·시설 및 서비스 등의 이용 편의성, 사회참여 및 포용 등의 원칙, 접근 가능한 복제본 부족에 따른 표현의 자유·교육 받을 권리·연구기회의 제한 및 장벽 해소, 후진국을 위한 복제본의 국경을 초월한 교환, 각국 저작권법과는 별개로 강화된 국제법적 기제에 근거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복제본 확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교육·연구·정보접근 등 공공이익 간의 균형 유지 등을 상기, 인식, 재확인하고 있다.

조약의 조문은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제12조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떤 절차 및 조건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실행될 수 있는지, 그 한계 등을 정한 실체법적 내용이고, 제13조-제22조는 조약의 기구, 발효요건, 회원자격, 언어 등을 명시하였다. 이를 간추린 <표 2>에서 키워드와 핵심 포인트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WIPO, 2013).

① 수혜자(beneficiary persons): 조약의 수혜자는 표준 인쇄물을 읽기가 곤란한 시각장애인(전맹인, 저시력자), 도서 등을 독서·이해하기 어려운 학습장애인, 난독증 등 인지장애인,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 상지마비(上肢麻痺)·파킨슨병 등으로 조작하기 힘든 신체장애인, 시·청각 중복장애인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수혜 대상이 아니다.

② 저작물(works): 수혜자가 비장애인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이나 시

〈표 2〉 마라케시 조약의 전모와 골자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 다른 조약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a) 저작물: 베른조약 제2조(1)에 규정된 텍스트, 주석 및 (또는) 관련 삽도 형식으로 된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 (b) 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본: 수혜자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대체 형태 또는 형식으로 복제된 저작물 (c) 인증기관: 정부가 수혜자에게 교육, 교육적 훈련, 적응형 독서나 정보접근 수단을 비영리적으로 제공하도록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수혜자	(a) 전맹인(blindness) (b) 실제로 인쇄 저작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 인지장애인, 독서장애인 (c) 신체장애로 인해 책을 들거나 조작할 수 없거나 통상 독서에 허용되는 범위에 내로 눈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난독증 등 기타 장애인
제4조	접근 가능한 복제본과 관련된 자국법의 제한 및 예외	1. 계약 당사자는 저작권법에 수혜자 복제물 이용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복제권, 배포권, 이용제공권, 공연권의 제한이나 예외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다. 2-3. 제1항의 의무에 부합하기 위한 이행사항을 규정한다. 4. 제한 또는 예외의 경우, 특별히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이나 수혜자가 시장에서 합당한 상업적 조건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저작물로 한정할 수 있다.
제5조	접근 가능한 복제본의 국경을 초월한 교환	1. 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이 제작되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른 계약 당사자의 수혜자나 인증기관에 복제본을 양도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행사항을 규정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제5(4)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기타 제한이나 예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5(1)조를 이행할 수 있다. 4. 베른조약, WCT에 가입하지 않은 계약 당사국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한 복제본의 국경을 초월한 부정 유통을 방지한다.
제6조	접근 가능한 복제본의 수입	• 계약 당사자의 국내법이 수혜자, 그 대리인 또는 인증기관에게 복제본 제작을 허용하고, 권리자 승인 없이 수혜자 편익을 위해 복제본 수입을 허용한다.
제7조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	• 계약 당사자는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수단이 적용되는 경우, 조약에서 정한 권리제한 및 예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다.
제8조	프라이버시 존중	• 조약에 규정된 권리제한 및 예외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는 타인과 동등하게 수혜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국경을 초월한 교환 촉진을 위한 협력	• 계약 당사자는 인증기관이 상호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복제본이 국경을 초월한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WIPO 사무국은 정보접근 포인트를 설치한다.
제10조	이행의 일반원칙	• 조약국은 이행조치(3. 베른협약, 기타 국제협약 및 조항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한 공정한 거래나 이용을 위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취한다.
제11조	제한·예외 의무	• 3단계 테스트를 포함한 기존 협약(베른협약, TRIPs 협정, WCT) 의무를 준수한다.
제12조	기타 제한 및 예외	1. 계약 당사자는 각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문화적 필요를 고려하여 수혜자 편익을 위한 기타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를 국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본 조약은 국내법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기타 제한·예외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총회	1. (a) 조약국은 총회를 구성한다. (b) 각 조약국은 총회에서 1인의 대표가 된다.
제14조	국제사무국	• 조약의 행정업무는 WIPO 국제사무국이 수행한다.
제15조	체결국 자격	• WIPO 회원국은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6조	권리·의무	• 계약 당사자는 조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7조	서명	• 조약은 마라케시 외교회의에서 공개·채택된 후 서명할 수 있다.
제18조	효력 발생	• 조약은 20개국이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당사국 효력 발효일	•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제20조	폐기	• 조약국은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해 조약을 폐기할 수 있고, 1년 후 발효된다.
제21조	언어	•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있다.
제22조	기탁자	• 조약의 기탁자는 WIPO 사무총장이다.

장에서 합당한 상업적 조건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저작물로서 기호 및 관련 삽도를 포함한 점자도서, 큰 활자 도서, 확대 사본, 녹음도서, 그리고 데이지 도서 등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③ 인증기관(authorised entities): 국가가 수혜자의 교육, 교육적 훈련, 적응형 독서, 복제본 제작, 국내외 대출과 공유, 전자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도서관 등을 말한다. 인증기관은 수혜 대상자 확인, 접근 가능한 복제본의 수혜자 또는 다른 인증기관 양도, 다른 조약국과 복제본의 국제교환을 위한 수출입,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서비스, 불허된 자료의 복제·양도·이용 가능성 방지, 수혜자 프라이버시 존중 등이다.

④ 접근 가능한 복제본과 관련된 자국법의 제한 내지 예외: 마라케시 조약은 계약 당사자가 접근 가능한 포맷의 사본을 복제·제공할 수 있도록 자국의 저작권법에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하도록 요구한다. 인증기관의 저작물 복제권, 수혜자와 인증기관의 복제본 배포권, 시각장애인과 인증기관의 복제본 온라인 전송 및 이용제공권이 대표적이다.

⑤ 접근 가능한 포맷의 국경을 초월한 교환: 계약 당사자가 저작권법의 제한 또는 예외,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복제본을 제작한 경우, 인증기관은 다른 계약국의 수혜자나 인증기관에 배포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국내법은 수혜자, 그 대리인 또는 인증기관에게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자 편익을 위해 권리자 승인 없이 복제본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요컨대 인증기관은 국경 없는 거래(borderless transaction), 즉 국경을

초월하여 송신 또는 제공할 수 있다.

2.2.3 조약의 적용성과 후속조치

1886년 스위스에서 체결된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 다자조약이다. 그 계보는 1952년 만국저작권조약(일명 세계저작권협약), 1979년 WIPO 설립협약,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 그리고 2013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2021년 3월 말을 기준으로 OECD 38개국의 저작권 관련 조약의 체결 현황과 2022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마라케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의 도서관 적용성 여부를 비교·분석하면 <표 3>과 같다(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21; IFLA, 2022). 후자의 경우, 총 17개국이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비준하였고, 5개국이 마라케시 권리의 도서관 적용성에 완전 부합하였으며, 25개국은 도서관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시각장애인 등에게 도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2개국은 난독자에게 예외를 적용한 반면에 다른 장애인을 포함시킨 국가는 13개국에 불과하다.

요컨대 마라케시 조약은 유엔의 CRPD 및 UDHR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각국 저작권법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 기근 해소를 표방하면서 발효된 후 국가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저작권법 개정, 수혜자 확대, 도서관 무료서비스 보장 등)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WBU, WIPO, IFLA 등은 조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약이 접근 가능한 복제본 제작을 억제한다는 출판계 주장에 따른 국가별 접촉·설득창구 설치, 선진국이 후진국을 위해 도서

〈표 3〉 OECD 국가의 저작권 관련 조약 체결 및 마라케시 조약의 도서관 적용성 여부

구분	저작권 관련 조약 체결				마라케시 조약의 도서관 적용성 여부									
	베른 협약 (파리 개정)	만국 저작권 조약 (1971)	WIPO 설립 협약	WIPO 실연 음반 조약	비준/기타	법령 개정	이용료 비지불		상업적 이용 가능성 체크 불요	등록 의무 배제	추가 기록 보관 요건 배제	난독자 예외 적용	다른 장애인 포함	
							도서	녹음 도서						
유럽	영국	■	■	■	■	■	개정	●	●	●	●	●	●	●
	독일	■	■	■	■	■	논의	불명	×	●	×	×	●	×
	프랑스	■	■	■	■	■	개정	●	●	●	×	×	●	×
	이탈리아	■	■	■	■	■	논의	●	●	×	●	●	●	?
	스페인	■	■	■	■	■	비준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덴마크	■	■	■	■	■	비준	●	×	?	?	?	?	?
	스웨덴	■	■	■	■	■	개정	●	●	●	●	●	●	?
	스위스	■	■	■	■	■	논의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핀란드	■	■	■	■	■	비준	●	●	×	●	×	●	×
	터키	■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개정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폴란드	■	■	■	■	■	비준	●	●	●	●	×	?	?
헝가리	■	■	■	■	■	논의	●	●	?	?	?	?	?	
체코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비준	●	●	?	?	?	?	?	
슬로베니아	■	■	■	■	■	논의	?	?	?	?	?	?	?	
에스토니아	■		■	■	■	비준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논의	●	●	●	●	×	●	●	
아메리카	미국	■	■	■	■	■	개정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	?	?	?
오세아니아	호주	■	■	■	■	■	개정	●	●	●	●	●	●	●
	뉴질랜드			■	■	■	논의	●	●	×	●	×	●	×
아시아	이스라엘	■				■	개정	●	●	×	●	?	?	●
	일본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

나 교재를 제공하는 글로벌 국가시스템 구축 촉구, 저작권법 제한 및 예외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도서관 및 사서를 위한 조약 지침의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2.2.4 조약의 기대효과와 한계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은 국제 인권법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의 궁극적 목적은 시각장애인 등의 글로벌 도서 해갈에 있지만, 특히 저개발국 장애인에게 삶과 교육의 기회를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직접적 기대효과와 긍정적 후광효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가 시각장애인에서 독서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에서 복제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조약은 시각장애인 외 안구의 초점이나 운동 등 장애, 상지마비, 난독·실독 등으로 인한 독서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복제·배포·송신할 수 있는 대체자료 범위가 확대되어 도서 해갈에 기여한다. 특히 조약에 비준하였음에도 대체자료가 절대 부족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시각장애인 등은 복제물 증가로 교육 및 독서 기회가 많아진다.

셋째, 인증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 가능한 복제본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복제물을 입수할 수 있다. 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비영리 공공대출, 유무선 전자통신에 의한 송신, 우편서비스, 인증기관이 지정한 제3자에 의한 발송 및

수령 대행, 기타 통신사업자의 전자우편과 게시판 등에 의한 전달이 포함된다.

넷째, 각국 저작권법 개정을 촉진하여 독서장애인의 접근·이용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종래의 대다수 국가는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방점을 둔 저작권법을 고수해 왔으나 조약에 비준한 후에는 저작권자의 권리제한 및 예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복제본의 국제적 교환 및 공유를 촉진한다. 비준국의 도서관 등 인증기관은 다른 국가의 시각장애인 등에게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 간의 국제적 교환도 가능하다.

여섯째, 특히 장애 대학생 및 교수의 교육학습과 학술연구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외국(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의 교재 및 학술서가 부족한 국가에서 도서관 등을 통한 국제 교환서비스가 제공되면 접근 가능한 자료가 많아져 도서 기근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마라케시 기적'으로 회자되는 조약은 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권 확대를 제약하는 요소도 적지 않다.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방점을 둔 저작권법과 달리 저작권자 권리제한 및 예외를 확대하고 의무적 준수사항이 포함시킨 국제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를 국내 상황과 연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67년 개정된 베른협약에서 도입된 베른 갭(Berne Gap)과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는 조약 성립에 최대 장애요소로 부상한 바 있다. 베른 갭은 제한적 조건 하에서 자유이용(free uses)을 보장하는 베른협약, 지

식재산권 협정(TRIPS), WIPO 저작권 조약 등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총칭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저작권자의 비승인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자유이용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테스트(특별한 경우에 한하고, 해당 저작물이 정상적 수익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가 베른협약 제9조(2)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베른 겐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간과한 선진국이 조약 제10조3에 3단계 테스트를 선제 요건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비준국은 준수해야 한다(이 일호, 2021, 202-203). 따라서 조약에 비준하였더라도 베른협약 등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는 복제물 교환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마라케시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2014년 6월 22일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 기준을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10월 8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서를 제출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근거하여 조약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그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는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등의 법리적 문제, 저작물 및 수혜자의 접근권 확대, 저작권자 권리 행사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를 감안한 미국은 「마라케시 조약 이행법」, 일본은 「독서베리어프리법」을 입법한 반면에 국내 당국은 조약 내용이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괴리가 심하다.

그런가 하면 조약 이행의 관문에 위치하는 출판계 비협조도 도서 해갈에 저해요소다. 저작권자·출판사 등은 최대 수혜자인 시각장애인이 지적재산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으로 확대되면 저작권자 권리침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따라 국립도서관에 제출하는 텍스트 파일의 비율이 저조하다. 「도서관법」 제22조 제2항은 요청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온라인 자료를, 제24조 제3항 후단에서는 요청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피한다. 그리고 출판계는 「도서관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 파일 형태에 관한 고시」 제3조가 납본대상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 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고 있어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고, 다시 디지털 파일로 변환·대조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적시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의 저작권자 권리보호 조항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조약 비준서를 기탁한 후에도 저작권자의 권리제한 및 예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copyright)의 문턱은 높다. 게다가 조약에서 인증기관으로 규정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체 자료 국제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이들을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도서 해갈은 요원하다.

3.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전략적 과제

장애인의 인권, 행복추구권, 교육 받을 권리 등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34조 제5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정보접근권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과 정보접근권을 인용한 마라케시 조약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이에 조약 이행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 기금을 해소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전략적 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출판계의 인식개선 및 표준화 유도

마라케시 조약은 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확대하고 수혜자를 독서장애인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출판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약 80%(질환 43.6%, 사고 36.4%)는 후천적 장애인(보건복지부, 2020. 9)이므로 비장애인은 곧 잠재적 장애인이다. 부언하면 장애인의 도서 기금은 비장애인의 그것과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출판계는 장애인의 도서 해갈 및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한 책임

과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은 헌법과 여러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저작권자 권리보호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그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출판계가 국제장애인단체(WBU)와 국제저작권기구(WIPO)의 합작품인 조약을 존중하여 도서 해갈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지원해야 한다.

셋째, 출판계가 조약 이행에 반발하는 이유는 지적재산권 근간의 와해, 창작의욕 약화, 파일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 미비, 무단 복제·송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다. 그 가운데 요체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본 제작·배포가 저작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우려다. 그러나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제출되는 자료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저장되고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무단 유출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정부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도서 해갈을 위한 출판계의 문턱을 낮추는데 방점을 두되, 복제·변환에 많은 비용투입과 시간적 지체가 불가피한 파일의 적시 제출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디지털·모바일과 접목된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시대를 감안하면 표준화된 전자출판물(전자전자, 전자악보, 디지털 음성도서 등) 출시를 앞당겨야 한다. 2011년 데이지가 국제표준규격으로 설정되었으나, 현재 개방형 전자도서 표준인 EPUB 규격의 일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향후 출판사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 EPUB 버전(DAISY판)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을 공공조달 입찰의 필수조건으로 부가하는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2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보완

마라케시 조약은 장애인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저작권 문제에서 인권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조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저작물에 큰 활자 도서를 포함시켰고, 독일은 저작물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본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시각적 저작물 및 부수된 자료를 음성과 기타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어·자막이 포함된 영상물 등의 대출·전송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에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폐관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관 접근성 약화에 대응할 의도로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52호) 제31조(도서관 등에 의한 복제 등)를 재개정하여 인터넷 송신처 범위를 도서관에서 개인 및 외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요체의 하나는 제31조 제7항에 규정한 '국립국회

도서관에 의한 절판자료 등 입수가 곤란한 저작물의 인터넷 송신'이고, 다른 하나는 제31조 제2항에서 '도서관 등에 의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 조사연구용 저작물 일부의 메일송신'을 허용한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31조가 도서관 밖의 개인에게 복제·전송을 금지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1986년 시각장애인, 2013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규정이 신설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된 지 5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디지털 기술 발전, 저작물·콘텐츠 유통환경 변화, 새로운 대체자료 등장, 장애인 정보수요 다변화, 다른 저작권제도와의 부조화 등을 감안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음에도 답보상태다.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 해갈과 정보접근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시급한 사안은 조약 제2조(정의)(b)(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와 (c)(인증기관), 제4조(접근 가능한 복제본에 대한 국내법 제한 및 예외), 제5조(접근 가능한 포맷의 국경을 초월한 교환), 제6조(접근 가능한 복제본 수입) 등의 전격적 수용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근거 조약	
저작권법	제2조(정의)	23.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3.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양도·대여·공연·전송 또는 <u>공중송신하는 것을 말한다.</u>	전문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①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제4조(복제본의 국내법 제한 및 예외)

구분	현행	개정안	근거 조약	
저작 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관련기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③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③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관련기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⑧ 「도서관」 제22조 및 제21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
	-	⑨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인증기관 및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복제·배포할 수 있다.	"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해 「점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자로 변환할 수 있다.	"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 . .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 . . 공표된 어문저작물, 악보로 표현된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에 부수된 시각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시각장애 등이 없는 사람과 동등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할 수 있다.	제2조 (a) (b) (저작물)	
	-	③ 시각장애인 등이 어문저작물 등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 등과 보호자를 포함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어문저작물 등을 변환·복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c) (수혜자)	
저작 권법 시행령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특수도서관	제2조 (c) (인증기관)
	제15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독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 . .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난독증, 실독증, 삼지마비 또는 뇌성마비, 시정각 중복장애, 일시적 절병, 고령 등으로 인하여 독서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	제3조 (c) (수혜자)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 . .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① . .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국립장애인도서관 4. 그 밖에 . . .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2조 (c) (인증기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 . .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 . .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 . .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 . .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먼저 「저작권법」의 경우, 조약 전문과 디지털 사조를 감안하면 제2조 제23호에서 정의한 배포(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공연, 전송 또는 공중송신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1조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다른 인증기관 및 시각장애인 등에게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복제·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33조 제2항에서 제한한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등으로 확대해야 국립도서관 등이 악보, 지도, 음반 등의 복제·배포·전송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시행령」은 제12조 제1호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추가하고, 제15조 제2호에 규정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난독증, 실독증, 상지마비 또는 뇌성마비, 시청각 중복장애, 일시적 절명, 고령 등으로 인하여 독서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체화해야 조약 제3조에 규정된 수혜자에 부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호의 단서의 내용 중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4조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개정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4조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 등이 도서관을 통해 접근·이용할 수 있는 복제물 범위를 공표된 저작물에서 「도서관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로 개정하고, 수혜자도 시각장애인에서 인지·발달장애를 포함하는 독서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을 인증기관으로

명시하고, 국경을 초월한 복제본 거래를 규정하여 수출입을 허용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데 따른 법적 보상이 시각장애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조약의 이행사항을 「저작권법」에 반영해야 한다.

3.3 국립도서관의 파일 수집 및 역량 강화

여러 실정법은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직접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 . .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과 제20조 제1항(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 . .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통한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동법 제21조 제5항의 후단(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과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이다.

양대 법적 근거를 감안하면 모든 대체자료의 생산 및 서비스 주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성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

서 출판계도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서관법」에 규정된 디지털파일 제출 조항의 외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의 악용, 저작권 침해의 우려, 인센티브 부재 등을 이유로 파일 제출에 미온적이다.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조약 제5조-제6조를 수용하여 「도서관법」 제24조에 제7항(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외국 인증기관 및 시각장애인 등에게 복제·배포할 수 있으며, 국내 시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입·제공할 수 있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때는 현재 제21조의2에서 2가지(요청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온라인 자료의 의무적 제출을 규정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한편,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미동의 자료'는 제외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해야 파일 확보 및 복제서비스 등에 유리하다.

셋째, 출판계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는 디지털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서관법」 제55조(과태료)에 법 제22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파일을 제출하는 비율은 인쇄도서보다 훨씬 저조할 뿐만 아니라 파일 제출을 요청해도 평균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이러한 현실을

목과하면 출판계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제출범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하여 장애인 '책나래' 서비스, 청각장애인 '대면낭독' 서비스, 디지털음성도서의 '3일드림' 서비스 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설·예산·인력 측면에서의 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 정책기능, 지원협력,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굴,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여 디지털파일의 수집력 강화, 대체자료 변환·제작중수 확대, 광역대표도서관을 비롯한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과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3.4 조약 이행을 위한 도서관지침 개발·적용

마라케시 조약은 각국에 이행을 일임하는 권장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에 따른 복병이 저작권법이라면 이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역은 도서관이다. 따라서 조약과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인증기관으로 규정한 도서관이 대체자료 제작·배포, 이용 편의와 자료서비스, 접근 가능한 복제물의 국제 교환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실무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주목한 국제 비영리조직인 도서관전자정보재단(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은 조약 이행을 구체화한 도서관지침을 발표하였다(EIFL, 2015, 6-21). 이 지침은 제1부(조약의 목적, 주요 조항 등 소개와 도서관 역할)와 제2부(주요 기술조항의 실무적 해석·적용

및 권고사항)로 구성하였다. 이어 2018년 8월 IFLA·EIEF는 공동으로 조약 가입국의 사서를 위한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Coates et al., 2018, 10-18). 이 새로운 지침은 4개 부문(마라

케시 조약의 기초, 도서관과 마라케시 조약, 접근 가능한 도서서비스,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서를 위한 이행지침의 골자를 집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IFLA·EIEF의 마라케시 조약 이행을 위한 도서관·사서 지침

부문	주요 내용	
마라케시 조약의 기초	성격과 의의	• 2013년 WIPO 회원국이 채택한 국제조약이자 유엔의 CRPD 및 UDHR의 인권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최초 저작권 조약임
	역할과 기능	• 독서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제작·배포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채택 이유	• 독서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을 막는 저작권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도서관의 관여	• IFLA 및 도서관계는 WIPO 협상을 강력 지원하였고, 마라케시 외교회의에 참여하였으며, 각국 도서관협회의 조언 및 논평을 청취하였음
	수혜자	•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 난독증·자폐증 등 발달장애인과 학습장애인, 파킨슨병과 마비 등 신체장애인, 시청각 중복장애인, 일시적 실명자 등). 단, 청각장애인은 제외됨
도서관과 마라케시 조약	조약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	• 독서장애인을 위한 복제본 제작·공유에 대한 법적 장벽 제거로 접근 가능한 대체자료가 증가하고, 자국 또는 지역 내에서 조정을 통한 도서관 중복 제작이 감소함
	조약에 따른 도서관의 제공 서비스	• 비영리 도서관과 조직이 독서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조약을 이용할 자격이 있으며, 정부가 독서장애인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한 영리단체에도 적용됨
	도서관의 의무와 역할	• 도서관에 복제본 제공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반면 복제본 제작·수출입 권리를 부여함 • 도서관은 독서장애인이나 그 대리자인 간병인 등에게 복제본을 직접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조약국의 도서관이나 인증기관에 복제본을 제공·수입하거나 목록화할 수 있음
	적용대상 저작물	• 텍스트 기반의 공개 저작물 및 관련된 표기법, 삽도·영상물을 포함하며, 공개된 디지털 리포지토리, 교육용 DVD 등에 삽입된 텍스트도 적용대상임. 단, 영화 등은 제외함
	접근 가능한 포맷	• 포맷은 독서장애인이 비장애인과처럼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모든 형식(점자, 큰 활자 도서, 녹음도서 등)을 말함. 페이지 도서, Word·PDF 등 일반적 포맷의 자료도 포함됨
	접근 가능한 저작물 공유	• 도서관 간에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교환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는 없음. 다만 국제 교류를 촉진하려면 교환 메커니즘이 단순해야 함
	기록 유지 필요성	• 도서관은 기록계획(수혜자 적격성, 도서관·개인의 배포 제한, 무단배포 억제, 취급상 주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수립·유지해야 함
접근 가능한 도서서비스	타도서관의 접근 가능한 자료 파악	• 많은 국가에서 독서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서비스와 비영리조직체 서비스를 통해 자료교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복제본 검색기능의 타도서관 제공	• 국제목록표준에 따른 메타데이터(형식의 유형, 버전·코드, 파일 크기 등)를 목록기록에 포함시키고, 지역단위 목록데이터 공유계획에 참여함
	도서서비스 비용의 청구	• 도서관이 조약을 이용하려면 비영리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제본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또는 배포에 따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저작권료 지불	• 조약은 복제본 제작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 문제를 각국에 일임하고 있음
	상업적 이용가능성 체크	• 자국 저작권법에 '상업적 이용가능성' 조항이 있고, 이용자 요구 자료의 포맷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서점, 온라인 구매)에는 복제본을 제작할 수 없음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제작	디지털 잠금장치 제거의 가능성	• 국가는 독서장애인의 접근·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제본 제작을 방해하는 디지털 잠금 또는 복제통제시스템은 법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함
	복제·배포를 불허하는 전자자료 라이선스 대응	• 조약에는 라이선스와 저작권 예외의 상호관계에 대해 규정이 없으므로 복제본 제작의 가능성 여부는 라이선스 조건이나 저작권법을 따라야 하며, 라이선스가 복제본 제작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보다 라이선스 조건을 우선 준수해야 함

따라서 「도서관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헌정보 학계, 한국도서관협회, 시각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IFLA·EIFL가 제시한 지침을 기반으로 국내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조항, 대체자료 제작·출시 및 디지털파일 복제·배포의 현주소,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이용행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방향, 접근 가능한 복제물의 국제교환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서관 실무지침을 조속히 개발·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조약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밀접성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실무지침을 기반으로 독서장애인 대체자료서비스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외국 교재 및 학술서가 부족한 교사, 장애 대학생 및 교수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국경을 초월한 복제물의 수입·제공을 선도해야 한다.

요컨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독서장애인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도서 기금은 출판계의 카르텔, 저작권자의 바리케이드, 도서관계의 취약한 플랫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책 가뭄이자 독서 갈증이고 접근격차의 주범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대체자료의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접근 가능한 포맷의 복제·배포·송신을 저해하는 법적 족쇄를 풀어야 한다. 더 중요한 과제는 시장 및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장애인서비스의 마지노선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권 보장 및 격차해소’에 충실한 공공재와 최후의 보루로 간주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도서 기금은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 정보접근 격차 및 위기, 불평등에 대한 메타포다. 이에 주목한 WIPO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대체자료서비스를 확대할 의도로 마라케시 조약을 성사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글로벌 도서 기근과 조약을 연계하여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약이 발효된 후 출판계는 대체포맷 및 수혜자 확대에 따른 저작권자 권리침해, 불법 복제·송신과 경제적 손실,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인센티브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하였고 국립도서관 파일 제출에도 미온적이다. 정부는 출판계가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의 중요성, 도서 기근 및 접근격차의 심각성, 저작권자 권리보호와 장애인 공정이용의 등가성을 인식하도록 설득하고, 대체자료를 출시할 때 EPUB 표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독서장애인 접근성을 공공조달 입찰조건에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보완이 시급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배포)에 ‘공연, 전송 또는 공중송신’을 추가하고, 제31조에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복제·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제33조 제2항의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도서관자료 등으로 확대해야 국립도서관 등이 악보, 지도, 음반 등을 복제·배포·전송하는데 따른 위법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추가하고, 제15조 제2호는 난

독증, 실독증, 상지마비 또는 뇌성마비, 시청각 중복장애, 일시적 질병 등으로 인한 독서장애인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파일의 제출요건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표준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교환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도서관법 시행령」에 엄격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법 제55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과 제24조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국제교환서비스 조항을 추가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재구성하여 파일 수집력 강화, 대체자료 변환·제작중수 확대, 도서관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마라케시 조약이 천명한 재량주의 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배포, 이용편의성과 자료서비스, 접근 가능한 복제물의

국제 교환창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IFLA·EIFL 지침을 기반으로 도서관실무지침을 개발·제공하고 사서교육을 통해 이해력을 높여야 하며, 도서관계는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서비스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경을 초월한 교환서비스를 선도해야 한다.

요컨대 절대 다수의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포박하고 차별한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독한 도서 기근'은 현대판 주홍글씨다. 이러한 낙인의 굴레에 대한 저항과 해체를 위한 신호탄이 WBU와 WIPO의 마라케시 조약이다. 음식이 육체를 지탱한다면 독서는 정신을 배양한다. 모든 저작권자, 출판계, 도서관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진언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접근격차인 95% 갭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야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 기근은 독서 향연으로 치환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동부.
- 이일호 (2021).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 Barker, R. & Escarpit, R. ed. (1973). The Book Hunger. Paris: Unesco.
- Cabinet Office (2019). White Paper on the Disabled. Tokyo: Cabinet Office.
- Calvo, F. J. M. (2009). From Better to Full Access to Works for Print-Disabled Persons.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 Coates, J. et al. (2018). Getting Started: Implementing the Marrakesh Treaty for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a Practical Guide for Librarians. Hague: IFLA/EIFL.
- EIFL (2015). The Marrakesh Treaty: An EIFL Guide for Libraries. Vilnius: EIFL.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Rome, FAO.
- IFLA (2022). Marrakesh Monitoring Report: Jan. 2022 Update.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1861>
- IFRRO (2018). Facilitating Access to Works for Print Disabled Persons: an IFRRO Guide. Brussel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 Lubbock, J. (1886). On the pleasure of reading. The Contemporary Review, 49, 240-251.
- McGrory, M. (2017). Putting the theory of Marrakesh into practice. WIPO Accessible Books Consortium(Moscow, September 2017).
- Ramírez-Montes, C. J. (2016). The Marrakesh Treaty: Study for the PETI.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 Roux, E. le (2021). The myth of the 'book famine' in African publishing.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Taylor & Francis Journals, 48(168), 257-275.
- UNESCO (1972). Books for All: a Programme of Action. Paris: UNECSCO.
- WIPO (2013).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Geneva: WIPO.
- WIPO (2016). The Marrakesh Treaty: Helping to end the Global Book Famine. Geneva: WIPO.
-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21). 著作権関係條約締結狀況.
출처: <https://www.cric.or.jp/db/treaty/status.html>

• 국한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opyrigh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2021). Status of Conclusion of Copyright- Related Treaties. Available: <https://www.cric.or.jp/db/treaty/status.html>
- Lee, Il Ho (2021). A Study for an Adapted Copyright Law to Promote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inju: Korea Copyright Commission.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0). 2020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Sejong: The Ministry.